

제7차 정기총회 결과 공고

제 목 : 제7차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서면총회 결과 공고

시행일 : 2020년 3월 25일 (수) 오후4시~

장 소 : 서면총회

1. 2020년 제7차 서면총회에 참여해주신 협동조합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서면총회로 대신한다는 기재부의 결정과 협의회 이사회의 논의에 따라 3월 18일 서면총회 동의 공지 후 온라인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았습니다.
정기총회의 서면동의를 총73개 회원조합중 40개 협동조합이 동의서를 제출, 과반수이상(54.7%)의 동의를 얻어 서면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인천협동조합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는 **정관18조 2항**에 따라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공고하고 안건을 전자메일을 통해 회원전체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제18조 (소집)

총회의 소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②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 ③ 회원 3분의 1의 동의로 회원단체가 소집 요청하는 경우
 - ④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4. 총회자료의 안건은 카카오톡 파일첨부와 메일로 안내드렸으며, 의결사안은 [제1호 의안] 감사보고, [제2호 의안]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건,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의 승인 건입니다.

5. 의결회원은 73명 중 44명으로 과반수이상(60.2%)이 참여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 다음은 총회 의결 결과입니다.

| 의 결 결 과 | | |
|-----------------------------|-----|-----|
| 안 건 | 찬 성 | 반 대 |
| [제1호 의안] 감사보고 | 44 | 0 |
| [제2호 의안]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 심의 | 44 | 0 |
|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 및 예산안 심의 | 44 | 0 |
| [제4호 의안] 임원 선임 건 | 44 | 0 |

7.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정관 제20조 1항에 따라 안건이 모두 승인 되었습니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동일하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회장은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8. 2020년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서면총회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회원 협동조합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